감사위원회운영규정

【제정】2014.03.28

【개정】2016.02.23

【개정】2018.10.24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감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운영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독립성)

위원회와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직무와 권한)

-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
- ②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을 승인한다.
- ④ 위원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
제5조(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이 사임,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한다.

제6조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정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 유고시에는 선임된 순서,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소집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을 정하고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8조(결의)

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.

제9조(부의 사항)

-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①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- 1.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
 - 2.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
 - ②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
 - 1.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
 - 2. 감사보고서의 작성, 제출
 - 3.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
 - 4.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
 - 5.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보고
 - 6.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- ③ 감사에 관한 사항
 - 1. 업무, 재산 조사
 - 2. 자회사의 조사
 - 3. 이사의 보고수령
 - 4. 이사와 회사간의 소 대표
 - 5.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요청시 소제기 결정여부
 - 6. 외부감사인 선임 및 변경, 해임 (2018.10.24 개정)
 - 7.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
 - 8.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
 - 9. 감사규정 및 지침의 제, 개정
 - 10.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견 (2016.02.23 개정)
 - 11. 외부감사인의 합의사항 이행여부 종합평가 (2018.10.24 개정)

제10조(관계인의 출석 등)

-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1조(의사록)

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.

제12조(외부감사인과의 연계 등)

-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시간, 필요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. (2018.10.24 개정)

③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, 선임 시 정한 사항들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 (2018.10.24 개정)

제13조(감사록의 작성)

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,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14조(전담부서의 설치)

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회사내에 전담부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부서의 장을 간사로 지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.